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1조(기준의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방화셔터(이하 "셔터"라 한다)의 설치위치, 구성요소 및 성능기준 등과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의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의 규정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확보한 문을 말한다.
- ② "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 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 ③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이하 "일체형 셔터"라 한다)라 함은 방화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를 말한다.
- ④ "하향식 피난구"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의 구조로서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수평 피난설비를 말한다.

**제3조(설치위치)** ① 셔터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일체형 서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일체형 서터의 출입구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유도등 또는 비상구 유도표지를 하여야 한다.
2. 출입구 부분은 서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서터의 구성)** ① 서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연기감지기·열감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발생시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주요구성부재·장치·규모 등은 KS F 4510(중량서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강제서터가 아닌 경우에는 KS F 4510(중량서터)에 준하는 구성조건이어야 한다.

② 서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③ 서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성능기준)** ① 서터(일체형 서터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성능
2. KS 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차열성능
3. KS 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개폐성능
4. 일체형 셔터의 피난 출입문을 여는데 필요한 힘(바닥으로부터 86cm에서 122cm사이, 개폐부 끝단에서 10cm이내에서 측정한다)은 문을 열 때 133N 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N 이하

② 방화문은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비틀림강도 · 연직하중강도 · 개폐력 · 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외에 다음의 성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단이 방화문은 비틀림강도 · 연직하중강도 성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의피난 ·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 또는 차열성능
2. KS F 2846(방화문의 차열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열성시험 결과 KS F 3109(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열성능
3.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인접창은 KS F 2845(유리 구획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해당 비차열 성능
4. 도어클로저가 부착된 상태에서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은 문을 열 때 133N 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N 이하

- ③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강장에 면한 부분에 대하여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 ④ 현관 등에 설치하는 디지털 도어록은 KS C 9806(디지털도어록)에 적합한 것으로서 화재시 대비방법 및 내화형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⑤ 하향식 피난구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KS F 2257-1(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한 수평가열로에서 시험한 결과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서 정한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을 것
  2. 사다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재료기준 및 작동시험기준에 적합할 것
  3. 덮개는 장변 중앙부에 637N/0.2m<sup>2</sup>의 등분포하중을 가했을 때 중앙부 처짐량이 15밀리미터 이하일 것

**제6조(시험기관)** 성능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2. 한국산업규격(KS A 17025) 또는 ISO/IEC 17025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국내공인시험기관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7조(성능시험 신청)** ① 신청자가 성능확인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붙임1]에서 정한 도서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에 성능시험을 신청하여

야 한다. 또한 시험기관에서 서류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신청자는 보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성능 확인 제품의 생산·제조업자 이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제조업자가 해외인 경우 국내 수입공급업자를 포함한다.

**제8조(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 ① 성능시험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시험체는 가이드레일, 케이스, 각종 부속품 등을 포함하여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재료 및 크기의 것으로 하되, 실제의 크기가 3미터 곱하기 3미터의 가열로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시험체 크기를 가열로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크기로 한다. 다만, 도어클로저를 제외한 도어록과 경첩 등 부속품은 실제의 것과 동일한 재질의 경우 형태와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험체로 볼 수 있다.

2. 내화시험 및 차연성시험은 시험체 양면에 대하여 각 1회씩 실시한다.

3. 차연성능 시험체와 내화성능 시험체는 동일한 구성·재료 및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도어클로저는 1회시험을 하여 성능이 확인된 경우 유효기간내성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험기관은 제7조에 의해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시료의 치수, 재질, 주요부품 및 구성도면 등에 대해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험의뢰인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시험성적서는 2년간 유효하며,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이  
지만 크기가 작은 것일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  
음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